

#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안의 고찰-2013년 징수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지영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 Pricing Policy of Music Service in Digital Music Market-focused on the Regulations for the Digital Music Service

Ji-young Jung

Dept. of Music, Hansei University

요 약 디지털 음악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법률적 제도의 측면에서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이미 디지털 음악 매출이 음반매출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높은 상승세는 이전의 다운로드 방식에서 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음악산업에서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음원 사용료 징수와 창작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주제어 : 음원서비스, 음원사용료, 디지털음악, 온라인음악, 음원정액제, 음원종량제, 디지털 융복합

**Abstract** As a result of growth of digital music market in Korea, Creator's rights and interests have been at the heart of the debate in terms of legal system. In the music industry, digital music revenue has now overtaken records sales and compared to download service it is now clear that music streaming and subscription is mainstream model in the rise of the worldwide market of digital music. This trend is also identical to the domestic and withholding regulations for music service and creator's rights and interests have become an ever growing issu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cided the revision of withholding regulations for the digital music service in 2013. The amendment is to change its policy of charging music service from the flat rate pricing to a usage-based system. This paper brought forward some disputable points such as fair division of profit, reasonable pricing for consumers etc. about the revision. Therefore, improvement of system and change in the perception of such copyrights are still required for both the encouragement of creator's activities and the high consumer satisfaction.

**Key Words** : Music Streaming, Music Streaming Service, Digital Music, On-line Music, Royalty of Music Streaming, Royalties on a copyright, Digital Convergence

Received 6 February 2015, Revised 20 March 2015  
Accepted 20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Jung  
(TDept. of Music, Hansei University)  
Email: jj0842@hansei.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양한 음악산업 중에서 해마다 급성장을 하고 있어 음원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자의 수익 또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음반시장 규모는 점점 작아졌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디지털 음악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발전은 K-Pop을 비롯한 한류문화의 빠른 전파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한국 대중음악은 질적 그리고 양적 성장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그 산업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창작의 주체인 저작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익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저작자의 권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작곡가나 작사가 등등 창작자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결국 양질의 음악들이 생산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음악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2004년 이후 대기업의 음원사업의 진출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음악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유료화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1년 소리바다 사건, 2003년 벅스뮤직 사건 등, 저작권료의 지불에 대한 법적인 분쟁들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음악의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유료화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세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그리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승인의 근거인 저작권법 제 105조 제 5항과 8항의 폐지를 주장하였다[1]. 2013년 정부는 다시 징수규정의 개정안을 승인하는데 기존의 음원정책제를 음원종량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음악시장과 그 산업 현황 및 시장 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여 디지털 음악의 산업규모와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음악시장의 현황과

변화에 따른 음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현황을 통해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들과 실연자의 실질적인 수익 배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음원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재 디지털음악시장에서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이익분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음원 사용에 대한 징수규정과 법적인 쟁점들은 온라인 상에서 음원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유료화가 시작된 이후에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음원 사용료에 대한 연구로는 세계음악산업 및 한국 음악산업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연구, 기존의 저작권의 보호 및 침해에 따른 법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 온라인 음악시장에서의 음악산업 구조 및 유료화에 대한 가격 결정의 주체적 역할, 그에 따른 저작권에 침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징수 규정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원선(2003)은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관련한 제 문제로 복제권과 배포권의 침해 등을 제기하였고 특히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의 쟁점인 법적인 성격을 논하고 있으며 아울러 음반제작자 및 신탁제도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당시 우리나라 음악산업에서 보여지는 과제들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2].

2005년 이후 대기업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음악사업에 진출하면서 유통을 주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산업적 문제들이나 온라인 상에서의 가격 결정 및 적절성이 연구 및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추연수(2005)는 2001년부터 시행중인 신탁관리제도의 문제와 음악산업의 구조 속에서 저작권자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 온라인 음원사용료에 대한 가격정책들을 비판하고 있다[3]. 이원재(2005)는 온라인상에서의 음원사용료에 대해 가격 결정의 주체가 저작권자나 음악 소비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음악생산자나 저작권 관련 사업자들의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를 실랄하게 제기하고 있다[4]. 조현승, 박민수(2005)는 당시 이슈가 되고 있던 온라인 음악의 가격을 시론적으로 접근하여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바람직한 가격을 추정하

여 제시하였다[5].

한류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 K-POP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한국의 대중음악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온라인 음악시장과 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유선실(2008)과 이은민(2011)은 국제 음반산업규모 및 국내 음악산업의 현황 및 구조의 변화들을 전망하였다[6][7]. 또한 이은민(2013)은 디지털 음악시장의 동향 및 주요 이슈들을 제시하여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와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클라우드 기반의 음악서비스 확산 등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음악산업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불법유통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8].

최근에는 음원 서비스에 대한 징수 규정에 대한 비판 및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구가 주로 많은데 이영주(2009)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동시 전송에 대한 법적인 분류와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이 타당한지를 연구하였다[9]. 최진원(2012)은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징수 규정 개정의 문제점과 이 징수 규정의 관련된 저작권법 제 105조의 폐지에 대해 논하였고 징수 규정의 비교적 검토를 위해 미국, 독일, 영국, 호주 그리고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저작권 관리 체계나 기관들을 고찰하였다[10]. 또한 최진원(2011)은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음악시장에서의 음악 산업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3단계의 징수 규정을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효과적인 제도로의 정착을 제안하였다[11].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온라인 음악시장 변화 및 음악산업구조의 디지털화 등을 파악 및 전망할 수 있었고 법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침해를 당하는 작곡가나 실연자들과 같은 창작자들이 구조적 그리고 제도적 문제점들이 많이 연구되었다. 징수 규정 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2013년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고찰과 저작자들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히 그리고 제일 비중 있게 보호 받아야 할 저작권자들과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음악 소비자들을 위해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3. 음악산업의 변화 및 현황

#### 3.1 세계 음악시장의 변화 및 현황

1995년 독일 프라운호퍼 게젤샤프트연구소에서 디지털 음악 기록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그 이름을 mp3 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세계 최초로 MP3P가 한국에서 탄생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대중화와 함께 급속도로 전파되었다[12]. 이후 1999년 mp3 공유프로그램인 ‘냅스터’는 통신기술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보급되었다. 이어서 미국 애플사의 콘텐츠 판매 시스템인 ‘아이튠즈’, 한국의 ‘멜론’과 ‘벅스뮤직’ 등 유료 음원 제공 사이트가 음악시장에서 비중 있는 산업의 주체로 자리 잡았다[13].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을 통한 실시간재생 서비스(Streaming Service)가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에서 전 세계 음악시장에 대한 규모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에서 보면 2012년 오프라인음반의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0.4% 하락한 499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연간 7%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음반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에는 2008년 대비 50%이상 감소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음악과 디지털음원시장의 확대로 음악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볼 때 디지털음원 시장은 7.5%, 공연음악시장은 3.1%의 연간 성장을 하고 있다.

<Table 1> 2008–2017 Music Industry Market

Categories	OFF-Line Music	Digital Music	Music Performance	Total
2008	23,817	6,329	24,973	55,119
2009	20,302	6,853	26,101	53,256
2010	17,491	7,295	25,200	49,986
2011	15,967	8,174	25,967	50,108
2012	14,389	9,015	26,528	49,932
2013	13,227	9,844	27,409	50,480
2014	12,326	10,627	28,339	51,292
2015	11,494	11,410	29,214	52,118
2016	10,713	12,178	30,035	52,926
2017	9,996	12,930	30,902	53,828
2012–17 CAGR	-7.0%	7.5%	3.1%	1.5%

Source:PwC 2013, \$/millions

그러므로 전체 음악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가지며 연간 1.5% 성장을 하여 2017년 전 세계의 음악시장 규모를 538억 2,800만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14].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악산업에 규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음악산업의 현황 및 전망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음반산업협회(IFPAI)에서 발표된 'Digital Music Report 2014'에서도 유사한 보고를 하고 있다. 전 세계 디지털음악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 디지털음악시장 중에서도 모바일을 통한 유료 음악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큰 음악시장의 변화로 보고 있다.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나 디지털 구독(subscription)의 규모는 2008년과 비교할 때 2013년 현재 51.3%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4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몇몇 주요 국 음반시장 규모와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6년 이후는 모든 나라에서 디지털 음악시장이 음반시장 규모를 앞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하던 디지털 음악시장은 아시아, 남미 등 전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보고하고 있다[15]. 그러므로 디지털 음악시장은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 산업적 측면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음원 서비스에 대한 수익배분의 문제 등 저작권자들의 권익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3.2 국내 음악시장의 변화 및 현황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2004년에 디지털 음악시장의 매출이 음반시장을 추월하였고, 2015년에는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이 음반시장의 38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6]. 국내 음악산업은 MC, CD, DVD 제작 및 판매하는 기존의 음반시장과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디지털음악 시장으로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2>에서 보면 음반 산업은 1990년대 지속적인 성장과 하락이 반복되었고 2000년 4,104억 원의 규모를 정점으로 하여 2006년에는 84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17]. 2010년 세계적으로 일어난 한류열풍으로 인해 국내 음반산업은 소폭 상승세를 탔지만 국내 인터넷 음악시장의 성장과 스마트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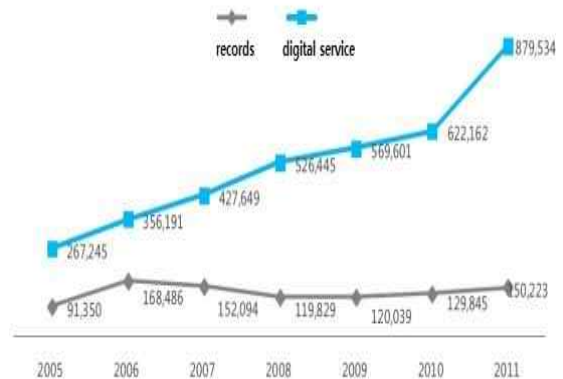
도입이후 그 주도권은 전통적인 물리적 음반시장에서 디지털 음원시장에 이동하였다.

<Table 2> 2000-2008 Records Revenue in Korea

Categories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Records Revenue	4,104	3,733	2,861	1,833	1,338	1,087	848	788	811

Source: Korea Music Contents Industry, ₩/100 million

[Fig. 1]는 국내 음악산업에서 음반 도소매 매출과 디지털 음원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2006년 이후 음반 도소매 매출이 감소하는데 반해 디지털 음원시장의 규모는 2005년 2,672억에서 2011년에는 8,795억으로 세 배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18].



[Fig. 1] Revenues of Records and Digital Music Market including retailers and wholesalers

Source: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p.198

### 3.3 국내 음악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한 문제점

이러한 디지털음악시장의 성장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나타냈다. 우선, 음악시장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저작자보다는 유통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음악 산업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창작자나 제작자는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음악 창작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익들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음악시장에 대한 진출은 음악시장에 있어 새로운 유통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창작자들의 권익이 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이동통신사인 SKT가 MLB(Music Licence Bank) 분배장산 및 이용허락을 위해 '멜론'이라는 온라인 음악서

비스를 출시하였고 이후 디지털 원천콘텐츠 확보를 위해 YBM음반사를 인수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대기업의 큰 자본이 음반시장에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음악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는 측면에서 음악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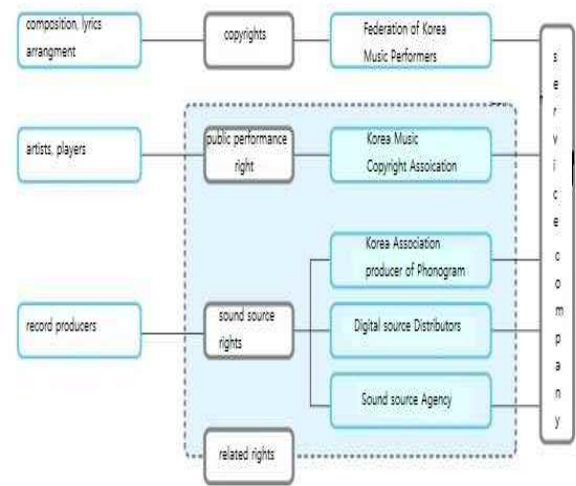
2004년 이후 음원 사용에 대한 유료화의 시작은 대부분 월정액제로 시작하였는데 2004년 3대 이동통신사인 LG 텔레콤, KT 그리고 SK 텔레콤이 각각 독자적인 온라인 음원사업에 참여하였다. 대략 3000원에서 4500원까지의 월정액을 채택하여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였는데 3대 이동통신사는 초창기 음악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면서 가격결정 및 수익분배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작권자들의 수익은 이동통신사와 제작자의 지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의 저작권료가 할당되어 있으며 음악 창작물의 실질적 권리자들인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실연자들의 저작권료는 현실성 없이 책정되어 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음악산업의 특수성과 현재 산업구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음악시장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창작자, 제작자, 실연자 그리고 소비자가 구조적 그리고 법률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의 유통구조와 관리구조가 산업 환경이 디지털로 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산업에 대한 이해나 저작권자의 법률적 제도가 부족한 형편이다. 더군다나 영화 출판물 등 여타 저작물 제작업자와도 차별하여 음악제작자의 역할과 권리를 축소시키고, 제작자들의 디지털 산업환경으로의 사업진출을 막아 제작과 판매, 재투자의 선 순환구조가 파괴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신탁관리제도는 오로지 음악에 대해서만 일괄신탁이 강행되고 있으며 전체 음악 제작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음반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신탁관리단체들이 음원에 대한 징수규정을 만들어 제작자나 저작자의 보상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20]. 또한 저작권료에 포함된 신탁관리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등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료에서 지출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저작권 수입은 더 작아 지게 된다. 일괄 신탁으로 인해 견어진 저작권료가 제대로 집행 및 분배되는지의 이슈도 신탁관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008년에 한

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탁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되거나 저작권료의 분배도 허위로 조작된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21].

2012 음악산업백서에서는 최근 디지털 음악시장의 분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Fig. 2]에서 보면, 우리나라 디지털 음악시장의 사용료에 대한 분배구조는 서비스 사업자가 음원권리자로부터 음원서비스의 사용을 위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와 이용허락 과정에서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과 아티스트, 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연권과 음원유통 및 디지털 음원 대리 중개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인접권이 있다. 국내 유통음악 중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약 97%, 실연권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약 70%를 담당하여 국내 유일의 대표 신탁단체이다. 저작인접권 중 음반제작자의 음원권 관리 부분은 저작권과 실연권과 비교할 때 비교적 신탁율이 낮지만 디지털 음원 유통사 및 음원대리중개업체의 음원권 확보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22].



[Fig. 2] Distribution Structure of Digital Music Service

Source: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p.199

#### 4. 한국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과 문제점

##### 4.1 2013년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안

디지털 음악시장의 확장으로 기존의 다운로드 방식

이외에도 가입형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이용 서비스,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 팟캐스트 등 다양한 음악 산업의 형태로 소비자들이 음악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터넷의 발전,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이 이러한 산업을 주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전의 디지털음악 시장에서의 음원 정액제를 음원종량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음원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인 무제한 정액제에서 이용횟수 당 징수방식인 이른바 ‘음원종량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제 23조 1항에서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기존의 정액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량제와 병행하는데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지만 그 금액이 종량제와 다를 경우 더 저렴한 경우로 산정된다.

이 개정안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여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악이 재생되는 횟수만큼 음악서비스업체가 저작권자인 가수, 연주자, 음원제작자 등에게 곡당 3.6원씩 저작권료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이 3.6원은 올해 책정된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6000원으로 기준으로 하고 월 평균 1000회 정도 듣는 것을 가정할 때 한 곡을 들을 때 마다 6원이고 이 6원에서 저작권 사용료는 60%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이 6원의 44%는 제작자가 취하고 10%는 작곡가와 작사가가 가지며 나머지 6%는 실연자인 가수나 연주자의 몫이다. 이 개정안을 토대로 볼 때 실제 창작의 주체인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오는 액수는 한 곡당 0.36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23]. 즉 음악저작물 하나가 100만건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액수는 약 36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다운로드 서비스와 방송 등등 저작권의 범위는 다양하므로 더 많은 저작권료가 발생 할 수 있지만 이는 대중음악 분야가 아닌 클래식 혹은 국악 등 다른 음악분야에 종사하는 저작권자들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저작권료만을 감안할 때 창작을 전문적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저작권자들에게는 현실성 있는 액수라고 할 수 없다.

4.2 2013년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안의 문제점  
온라인상에서의 음원의 불법유통이나 복제 등으로 인해 법적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99년 미국의 18개 음반회사가 냅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서비스 중지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2002년 우리나라 소리바다도 끊임없이 법적 분쟁 끝에 폐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적 분쟁들은 저작자들의 창조물인 음악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통될 때 유료화되고 마땅히 저작권료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3년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볼 때 우선 일부 사업자들만을 위한 가격상승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에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저작권자의 권익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소비자 단체는 이 징수개정안을 두고 전년대비 40-100%에 이르며 2016년에는 200%이상 인상되는 온라인 음악가격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소비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업계 관련자들 간의 가격에 대한 인상만을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비자단체는 주장을 하고 있다[24]. 최근 소비자, 저작권리자, 서비스 사업자들의 가격에 대한 견해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소비자 수용도 조사를 통해 월별 소비자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격을 4,750원이라고 발표 했으며, 정부가 제정한 개정안에는 월 6000원 그리고 권리자들의 주장 가격은 9000원 이상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정부, 그리고 권리자가 온라인 음악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25]. 정부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책정되어지는 저작권료나 음원 서비스 사용료가 아닌 창작의 주체와 소비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고 창작물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저작권료가 배분되기 위해서 이러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가격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 5. 결론과 제언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과 함께 ‘음원 사용료’의 분배

는 계속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는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음악시장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원사용의 유료화와 저작 권리자들에게 합당하게 이 사용료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다.

특히 2013년 음원 사용 징수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온라인상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가 이용 횟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지고 가격의 60%정도가 저작권자들의 몫으로 책정되었지만 여전히 실제 창작의 주체인 저작자들과 음악적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모두를 만족할 수 없으며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저작권자의 수익분배 중에서도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실수익률은 10%정도 내외이며 나머지는 유통업체 및 제작자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제작자, 유통업체가 징수규정의 주체가 되어 있는 제도 때문에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작자의 권리가 배제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음원서비스에 대한 수익배분이 합당한지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제도적 참여도 필요하다. 창작자가 받는 실질적인 수익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창작자의 수익이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음원서비스의 징수를 맡고 있는 국내 신탁단체에 대하여서도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음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자료 분석 및 인식도 조사 그리고 통계적 접근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창작물의 가치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보다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높은 평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창작자에게 배분되는 수익의 타당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창작자의 합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해외사례의 수익구조 연구 및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선진적인 체계를 가진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창작자를 위한 수익분배에 대해 보완되어야 할 제도나 규정들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저작권료나 음원서비스 수익 분배를 통해 창작자의

권익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익률은 어느 정도 인지를 제시할 수 있다.

단순히 온라인 음악시장에 대한 단순한 가격 책정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음악의 문화적 공공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음악과 지적재산권의 관계는 시장과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역과 관계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26]. 또한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료화를 사업자 중심이 아닌 창작의 주체인 음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익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Jin-Won Choe, The Study of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and the System of Withholding Regulation. *Informedia Law*, Vol 16, No. 3, pp.1-25, 2012.
- [2] Wonsun Im, The Study of Issues in On-line Music Service, Vol. 7, pp.196-224, 2003.
- [3] Yoensoo Choo, The Price Policy of Music Contents about the On-line Music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ol. 6, pp.134-139, 2005.
- [4] Won Jae Lee, The Metafiction of Discussion about Music On-line Service fe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ol. 6, pp.131-133, 2005.
- [5] Hyun Seung Cho, Minn Soo Park, A Study on Price of Online Music Service, *Study of Culture and Economy*, Vol. 8, No. 1, pp. 3-23, 2005.
- [6] Sun Shim Ryu, Status of the World Music Market, *The Policy of Communication*, Vol. 20, No. 3, pp.27-30, 2008.
- [7] Eun Min Lee, The Outlook and Change of On-line Music Market, *The Policy of Communication*, Vol. 23, No. 23, pp.22-34, 2011.
- [8] Eun Min Lee, The Issues of Digital Music Market, *The Policy of Communication*, Vol. 25, No. 4, pp.1-20, 2013.
- [9] Yeomg-Ju Lee,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Legal Classification of Terrestrial Internet-Simulcasting

and Copyright-Using Charge for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3, No. 3, pp. 222-453, 2009.

- [10] Jin-Won Choe, The Study of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and the System of Withholding Regulation. Informedia Law, Vol 16, No. 3, pp.1-25, 2012.
- [11] Jin-Won Choe, Environmental change of Music industry and License Agreement according to the popularization of a Smartphone, Contents Property Law and Policy Review, Vol. 2, pp. 83-102, 2011.
- [12] Jin-Hyuk Lee, Young-Chun Lee, Yoon-Hee Koo, Remediation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Change of MP3Player I: Re-mediation and Genealogical Chan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1, pp. 59-68, 2013.
- [13]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127/3/70040100000127/20131220/59675858/1](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127/3/70040100000127/20131220/59675858/1) 2014.7.16.
- [14] KOCCA Report 2013.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pp.38-39, 2006.
- [15] IFPI Digital Music Report 2014. IFPI, pp.7-19, 2014.
- [16] Eun Min Lee, The change and hereafter development of On-lin Music Market. The Policy of Communication, Vol. 23, No. 23, pp. 22-24, 2011.
- [17]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pp. 181-182, 2013.
- [18]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pp. 197-198, 2013.
- [19]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pp. 197-198, 2013.
- [20] Soo Yoen Co, A Note on Pricing Policy of Music Cont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p. 134-137, 2005.
- [21] INews24, 2008.10.1.
- [22]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pp. 198-200, 2013.
- [23] Yonhap News, 2013.3.18.
- [24] The Financial Times, 2013.7.15.
- [25] The Digital Times, 2013.10.15.
- [26] Won Jae Lee, Metafiction of Argument about Price of On-line Music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p. 131-132, 2005.

정 지 영(Jung, Ji Young)



- 1993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학사)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석사)
- 1998년 9월 : 미국, 뉴욕대학교 작곡과(석사)
- 2002년 6월 :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작곡과(박사)
- 2002년 9월 :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음악이론과(석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작곡, 음악이론, 저작권, 대중음악
- E-Mail : jj0842@hansei.ac.kr